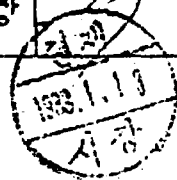


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분류기호 문서번호	건지 455-37	(전화번호 724-5680)	건물규격	조 상 전체 사항						
처리기간	83. 1.									
시행일자	83. 1.			0053						
보존연한										
보	부 시 장		법	법무 담당관 심사필						
조	건설관미국장		관	건축 행정 개관						
기	건축 지도 과장	건축 계획 과장	조	지도 1계장						
기	안 배 임 자	전철본		지도 2계장						
경	유	관안참조								
수	신									
합	조									
의	주	권한위임 사항 고시								
(제 1안) 내부결재										
주. 건축법 및 등법 시행령 제 7)에 따라 연면적 3,000 M ²										
이상 건축물 또는 7층 이상의 건축물에 관한 권한과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특수한 건축물의 조치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주. 현재 상기 권한이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권한 사전 날인등의										
부당한 행정 절차를 반복하고 있어, 행정 간소화 및 민원 업무 하부 이양										
취지에 따라 법적 권한위임 확대 시행 방안과 같이 시행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 4조에 외기 법안과 같이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제 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table border="1"> <tr> <td>연수실사</td> <td>1983. 1. 2 제 3호</td> </tr> <tr> <td>참관자</td> <td>법체세장 법무담당관</td> </tr> <tr> <td>진행</td> <td></td> </tr> </table>					연수실사	1983. 1. 2 제 3호	참관자	법체세장 법무담당관	진행	
연수실사	1983. 1. 2 제 3호									
참관자	법체세장 법무담당관									
진행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계기한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2조 제 15호 나목, 제 5조, 제 6조 제 3항, 제 6조 7항, 제 7조, 제 7조의 2, 제 9조의 2 제3항, 제 42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3항 및 제 5항, 제 43조, 제 4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다만, 등적가구 정비지구, 아파트지구 및 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 법 제 4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의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물 또는 법 제 5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권한과, 제 1, 2종 미관지구 내의 5층 이상 또는 10,000 M² 이상 건축물 및 제 1, 2종 미관지구 이외의 11층 이상 건축물 (대수선, 용도 변경, 확장변경 제외)의 건축심외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본 고시로 인하여 서울시 고시 제 164호 (73. 12. 3)는 폐지한다.

1983.

1.

서울특별시시장

(제 3안)

수신 총무처 장관

제목 관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보 게재건명 : 권한위임사항

나. 관보 게재구분 : 고시

다. 법규 근거 : 건축법 제 4조 및 동시행령 제 4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매. 끝.

10월 10일 10시 10분 10월 10일 10시 10분 10월 10일 10시 10분 10월 10일 10시 10분 10월 10일 10시 10분

(제 4안)	
수신 통보관	발신 : 국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제3안 가, 나, 다" 이기 시행).	
첨부 고서본 사본 2매. 끝.	
(제 5안)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 시장
제목 건축 업무 권한 위임	
1. 건축법 제 4조 및 동시행령 제 4조에 의거 다음 사항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을 고서하였기 통보 하시 업무처리시는 법령 기준을 참조 하여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권한의 위임 내용 (제 2안 "고서안" 이기 시행).	
첨부 권한위임 확대시행 방안 1부. 끝.	
수신처 : 서부 1-17.	